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이해

2022.11.



목 차

I.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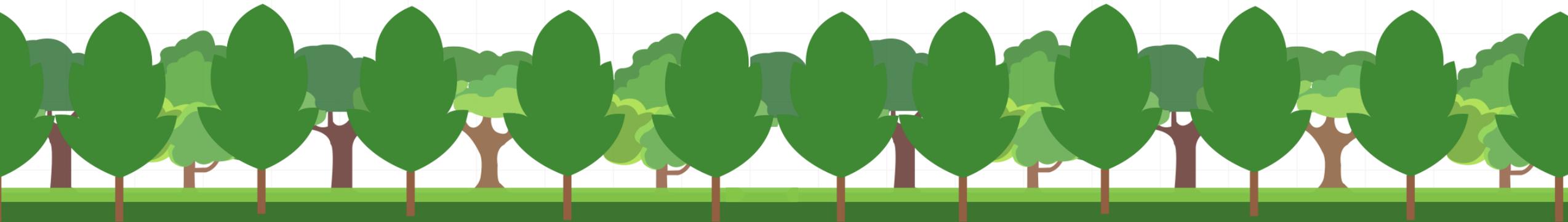
II. 등급평가 기준

III. 자체평가 및 증빙서류

IV. 등급표시 및 연기신청

V. 포장재 재질구조 목록 관리 및 제출

I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개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제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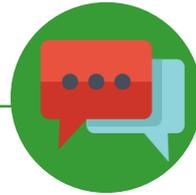
📎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8.12.24. 제정·공포, '19.12.25. 시행]



01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가
지속적으로 생산·유통되어
폐기물 회수·선별·재활용
과정으로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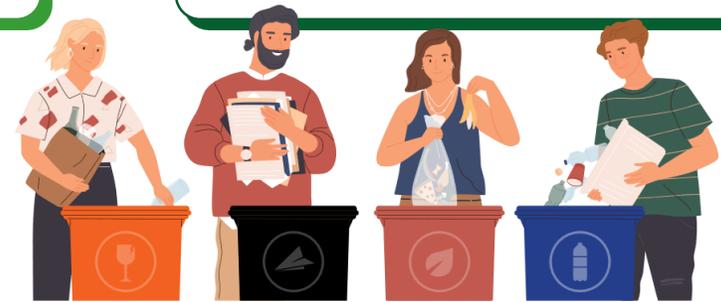
02

재활용률 저하·재활용비용
증가·재활용제품
품질 저하·
유해물질 발생 등 문제
유발



03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및
결과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제도



📎 등급평가 의무 대상

대 상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단, 제16조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활용의무가 면제된 의무대상자는 평가의무 면제
평가품목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하는 포장재)
평가항목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에 대해 재질의 종류, 해당 색상 여부, 몸체와의 분리 용이성 등을 평가
평가등급	4개 등급 “재활용 최우수”(페트병, PSP 한정),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 관련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2

📎 미이행시 조치사항

-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평가를 받는 경우
- 등급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표시를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관련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등급평가 대상 포장재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하는 포장재

구분	대상 제품	포장재 예시
종이팩	음식료품 농·수·축산물 세제류	
유리병	화장품 및 애완용품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 제품	
금속캔 (알루미늄, 철)	의복류 위생용 종이제품 고무장갑	
합성수지 재질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타 제품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쇼핑백	

-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제품은 평가 비대상
* 적용기준 (제조업) 제조 전, (수입업) 수입통관 전
-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
- ① 원료용 B2B 제품
② 원재료 수입 포장재를 사용 후 자체 폐기하는 경우
③ 자체 소비하는 제품의 포장재 등 유상판매 여부 및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EPR 대상 포장재**는 모두 평가 대상

등급평가 대상 포장재(면제)

다음표의 출고·수입량 또는 매출·수입액 미만일 경우 **재활용 의무 및 평가의무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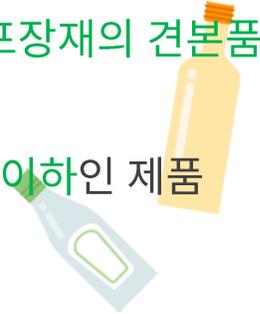
구분		출고량	수입량	매출액	수입액
종이팩		4톤	1톤	10억	3억
유리병		10톤	3톤		
금속캔	알루미늄캔, 철캔	4톤	1톤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PET병, PVC, 단일재질, 복합재질·필름·시트류	4톤	1톤		
	발포·PSP	0.8톤	0.3톤		
	전기기기류 필름· 시트형 포장재	4톤	1톤		

※ 관련근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 16조제2항 별표4

등급평가 비대상 포장재 (EPR 비대상)

● EPR제외 품목

-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제품·포장재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
- 의약품 및 의약외품 중 바이알·앰플·PTP포장·병모양이 아닌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에 따른 비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 EPR 비대상 포장재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외의 포장재
- (종이포장재) 일반종이 및 종이에 합성수지가 양·단면으로 코팅되거나 부착된 종이의 경우 “종이포장재”로 분류
* 다만, 합성수지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종이재질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 복합재질”에 해당
- (합성섬유 포장재) 직물, 편물로 되어있는 합성수지섬유



[참고] 종이팩 vs 종이재질

종이팩 포장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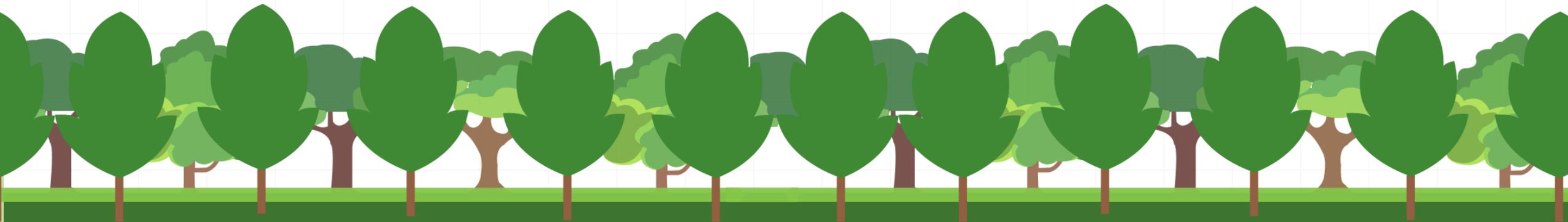
종이재질 포장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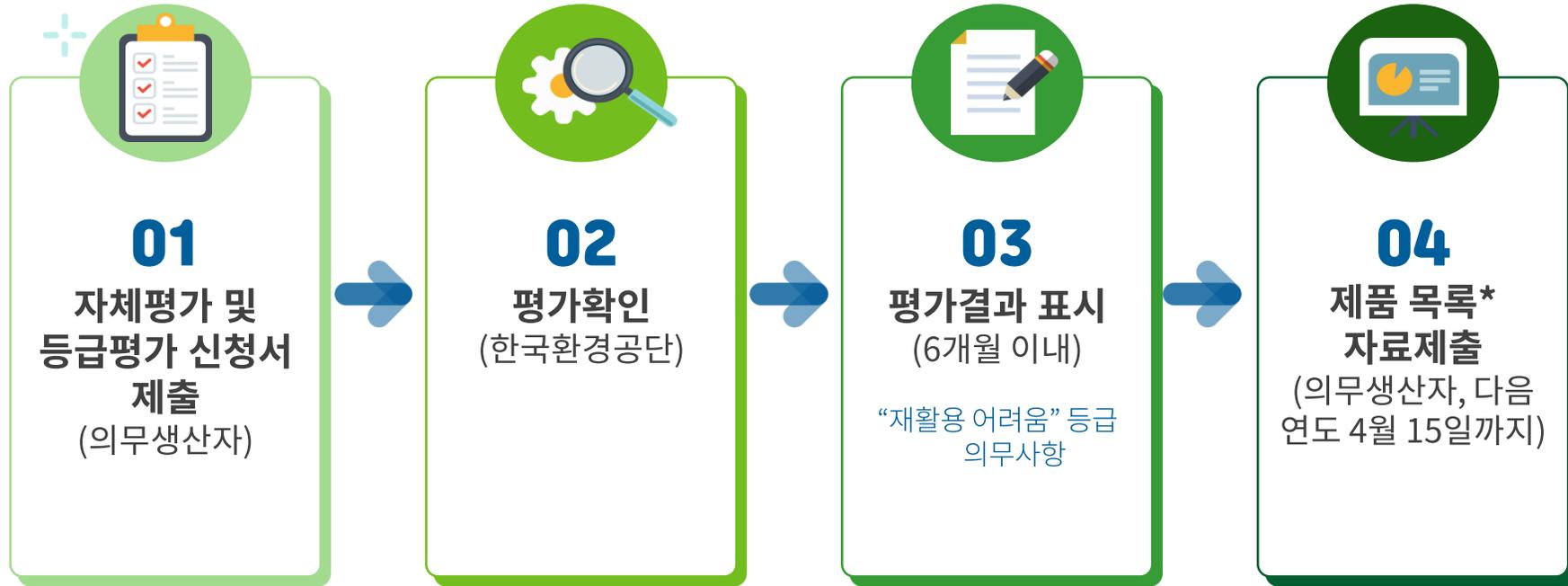
단, 과일박스를 덮고 있는 비닐은 평가대상

종이

II. 등급평가 기준



등급평가 업무 흐름도



등급평가 기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별표 1]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 최우수/우수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부여

“재활용 최우수” 등급은
페트병, PSP 포장재만 해당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 보통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또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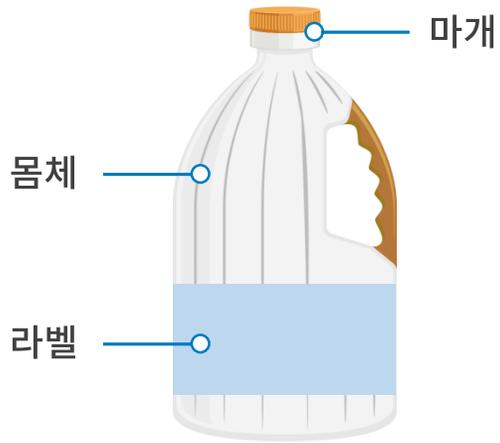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재활용 어려움

-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



포장재 예시

I 기본



몸체

제품을 담기 위한 본체

마개

용기의 입구를 씌워 외부로 새거나 이물질이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뚜껑, 밀봉 기능의 덮개

라벨

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 등으로 제품의 내용, 제조일 등을 표시한 것



잡자재

포장재 몸체에 편리성 부여 및 상품성 향상 등을 위하여 부착한 것으로 병의 손잡이, 빨대 등이 해당

고시 [별표1] 포장재 재질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I (예시) 종이팩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 우수)

- 알루미늄 첩합 구조를 사용하지 않은 종이팩

- 미사용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재활용 어려움)

- 알루미늄 첩합 구조를 사용한 종이팩
- 미표백 펄프사용
(백색을 제외한 펄프를 사용한 제품)

-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¹⁾

1) 마개 및 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량(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 포함)의 10%이내인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

Tip

종이팩은 우유팩, 주스팩과 같이 종이의 양면에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 등으로 첩합하여 액체를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이므로 일반 종이상자와는 구별됨

등급평가 세부 기준 예시

I (예시)종이팩

몸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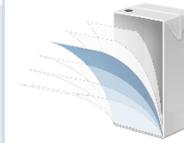
재활용 우수



알루미늄 첩합 구조 미사용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알루미늄
첩합 구조

1. 폴리에틸렌
2. 종이
3. 폴리에틸렌
4. 알루미늄
5. 폴리에틸렌
6. 폴리에틸렌



미표백 펄프
(백색 외)

마개 및
잡자재



미사용



몸체와 분리
가능한 빨대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 구조물
(마개 및 잡자재가 포장재
전체 중량의 10% 이내)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 구조물
(마개 및 잡자재가 포장재
전체 중량의 10% 초과)

[유의사항]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단위

포장재는 제품별·업체별이 아닌 포장재 재질·구조 단위로 신청

동일한 재질·구조를 가진 포장재*의 경우 대표제품 1품목만 신청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별표 1]의 세부기준에 따라 동일한 재질, 구조로 분류되는 포장재

1. 자체평가 시행

몸체

단일 합성수지 필름·시트류 → 재활용 우수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미사용 → 재활용 우수

자체평가
재활용
우수



2. 그룹화



몸체

단일재질 무색 → 재활용 우수

라벨

비중1미만 합성수지재질 열알칼리성분리 접(점)착제 사용 → 재활용 우수
(병 전체 면적 20%, 라벨 면적 60% 이내, 가장자리 미도포 포함)

잡자재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 재활용 우수

자체평가
재활용
우수



[유의사항] 다중포장재*의 평가 단위 구분

-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경우
- 각각 평가하여야 함(1차 포장재와 2차 포장재의 재질이 다른 경우, 각각 몸체의 기준에 따라 분류)

도시락 트레이(소스 및 젓가락 포함)를 외장필름으로 포장한 경우

예) [1차 포장]몸체(PP) + 마개(PP)[2차 포장]외장필름(PP) / [별도 포장]소스포장(PE), 젓가락포장(PP)

포장재	구분	재질·구조 세부 기준
   	1차 포장 (트레이)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
	2차 포장 (외장필름)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포장재
 	별도 포장1 (소스포장)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포장재
 	별도 포장2 (젓가락 포장)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포장재

[유의사항] 다중포장재*의 평가 단위 구분

📎 뚜껑과 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포장재가 사용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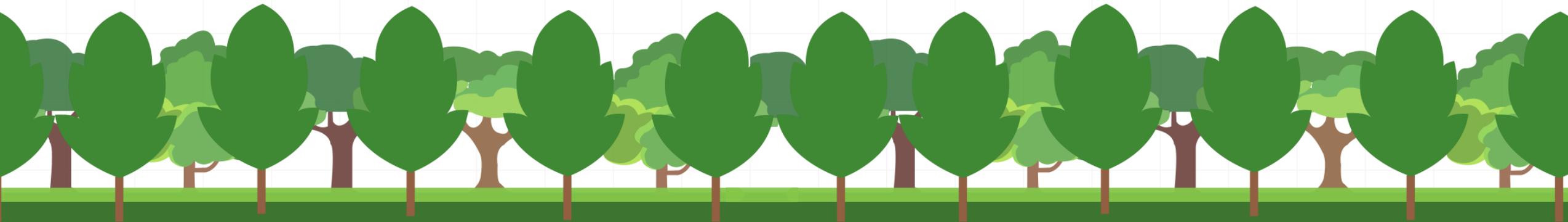
- 몸체의 재질을 기준으로 하여 일체로 평가(뚜껑 등 잡자재*는 포장재의 구성항목 중 하나로서 몸체의 재질·구조 기준에 따라 평가)

* 포장재 몸체에 편리성 부여 및 상품성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서 병의 손잡이, 캐릭터 마개, 빨대, 제품의 개봉 방지·유통이력 관리 등을 위한 스티커 등이 해당



몸체와 분리되지 않는 뚜껑으로 몸체와 하나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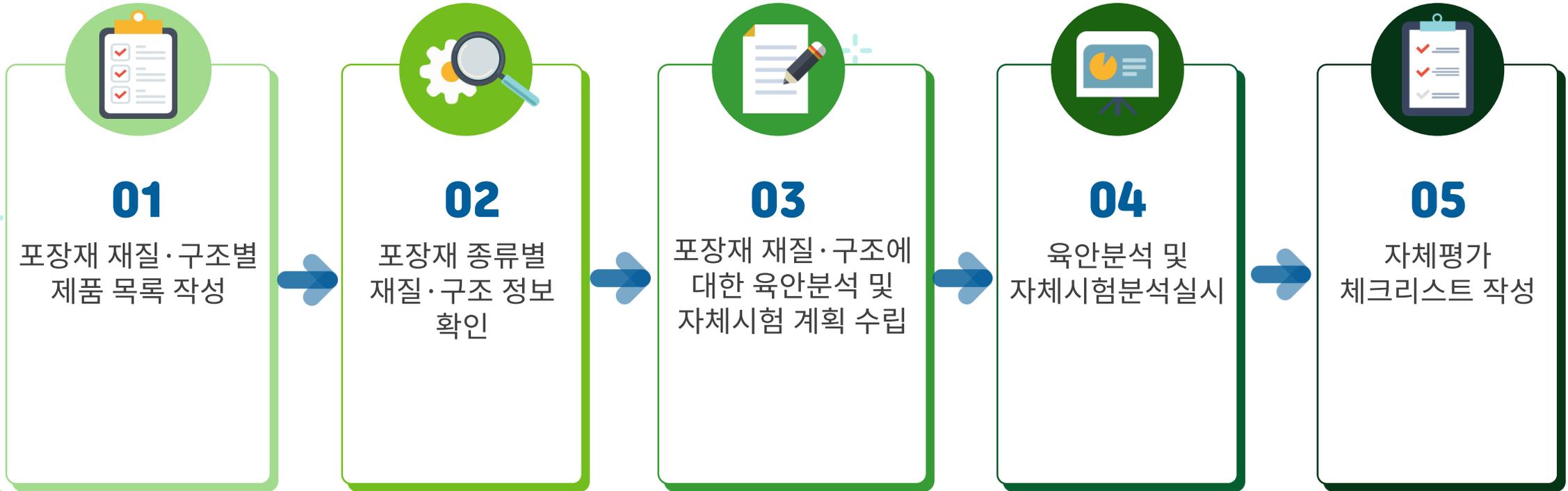
III. 자체평가 및 증빙서류



자체평가 업무 흐름도

I 자체평가란?

평가의무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 전 사용하는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포장재의 등급을 예측



01 포장재 재질·구조별 제품 목록 작성

-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전수 조사하여 포장재별*로 사용된 재질·구조 목록 작성
※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단일 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로 구분
- 포장재의 재질·구조가 동일하나 포장재(제품) 크기 등이 다른 경우에는 포장재 재질·구조별로 제품 목록 정리



02 포장재 종류별 재질·구조 정보 확인

- 포장재를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로 구분
- 공인시험분석기관에 분석 의뢰 또는 기 보유중인 포장재(부자재) 재질·구조 정보 취합·정리
- 재질의 종류·색상·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사용 여부 및 몸체와의 분리가능성 확인



03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정리

- 포장재 종류별, 재질·구조별로 자체평가 결과 정리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공단에 제출하는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작성에 활용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예시

| 증빙서류 확인

마개 및 잡자재

- (재질, 비중)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재질·구조 증명서,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 등
- (색상) 육안판정 결과서

몸체

- (색상) 육안판정 결과서
- (재질)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재질·구조 증명서,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 등

라벨

- (재질)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재질·구조 증명서,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 등
- (열알칼리성 분리 가능 접(점)착제 사용 여부)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입증서류
- (접착제 도포면적)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입증서류
- (구조) 육안판정 결과서,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재질·구조 증명서



*인정서류 예시 참조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예시

| 자체평가 결과

마개 및 잡자재

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PE)

재활용
우수

몸체

무색 페트병 (PET 재질)

재활용
우수

라벨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로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사용
병 전체 면적 20%, 라벨면적 60%이내 (가장자리 미도포 포함)

재활용
우수



최종등급 : 재활용 우수

세부 기준별 포장재 등급 확인 방법

I 간이평가

① 포장재종류 선택

② 해당하는 체크리스트 확인

③ 최종 등급 확인

포장재 재질구조 간이평가

HOME > 고객마당 > 포장재 재질구조 간이평가 > 포장재 재질구조 간이평가

조회조건

포장재 종류: 페트병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구성	재활용 최우수/우수	재활용 어려움	재활용 보통
몸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일재질 무색	<input type="checkbox"/> 녹색 이외의 유색(먹는샘물, 음료류 제외) <input type="checkbox"/> 글리콜변성PET 수지(PET-G) 재질이 혼합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유색 페트병(먹는샘물, 음료류) <input type="checkbox"/> 복합재질	<input type="checkbox"/> 단일재질 녹색(먹는샘물, 음료류 제외) <input type="checkbox"/> 기타
라벨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input type="checkbox"/>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한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로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절취선 또는 점(점)착제 도포 시 가장자리 미도포) <input type="checkbox"/> 비점(점)착식 <input type="checkbox"/> 라벨면적의 0.5% 범위 미만으로 열알칼리성 분리 점(점)착제가 도포된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열알칼리성 분리 점(점)착제를 사용하고 점(점)착제 도포면적이 페트병 전체면적의 20%, 라벨면적의 60%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가 없는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재질 <input type="checkbox"/> 열알칼리성 분리가 불가능한 점(점)착제 사용 <input type="checkbox"/> 몸체에 직접 인쇄(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표시 제외) <input type="checkbox"/> PVC 계열의 재질 <input type="checkbox"/>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input type="checkbox"/> 금속혼입재질	<input type="checkbox"/>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로 열알칼리성 분리 점(점)착제를 사용하고 점(점)착제 도포면적이 페트병 전체면적의 20%, 라벨면적의 60%를 초과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로 열알칼리성 분리 점(점)착제를 사용하고 점(점)착제 도포면적이 페트병 전체면적의 20%, 라벨면적의 60% 이하이나 가장자리를 도포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로 절취선이 없는 비점(점)착식 <input type="checkbox"/> 절취선이 있는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재질 <input type="checkbox"/> 기타
마개 및 잡자재	※해당하는 1가지에 대해서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개, 잡자재 등 각각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 제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input type="checkbox"/> 무색 페트 단일재질	<input type="checkbox"/>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무색 페트 단일재질 제외) <input type="checkbox"/> PVC 계열의 재질 <input type="checkbox"/>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input type="checkbox"/>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포함된 비중 1미만의 잡자재 <input type="checkbox"/>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구성된 부분이 몸체, 마개 모두와 완전분리가 가능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체평가등급: 재활용 우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

📎 제품에 대한 포장재가 완료된 이후 관련법에 따라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라벨 또는 검사필증 등
 - 수입제품의 한글표시 라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주세법,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

제품
사진

철캔



유리병



페트병



한글
표시사항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제품명: 인스턴트커피
 식품의 유형: 인스턴트커피
 제조사: Caravel Coffee-Corps
 원산지: [Blank]
 수입판매원: [Blank]
 유통기한: 제품 유효기간 표시일까지(유효월년)
 중량: 10g (2g x15봉)
 원재료및함량: 볶은커피 100%
 포장재질: 알루미늄
 반품및교환처: [Blank]
 보관방법: 건조 서늘한곳에보관
 *부정, 불량식품신고는 국번없이1399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제품명: 인스턴트커피
 식품의 유형: 인스턴트커피
 제조사: Caravel Coffee-Corps
 원산지: [Blank]
 수입판매원: [Blank]
 유통기한: 제품 유효기간 표시일까지(유효월년)
 중량: 10g (2g x15봉)
 원재료및함량: 볶은커피 100%
 포장재질: 유리
 반품및교환처: [Blank]
 보관방법: 건조 서늘한곳에보관
 *부정, 불량식품신고는 국번없이1399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제품명: 인스턴트커피
 식품의 유형: 인스턴트커피
 제조사: Caravel Coffee-Corps
 원산지: [Blank]
 수입판매원: [Blank]
 유통기한: 제품 유효기간 표시일까지(유효월년)
 중량: 10g (2g x15봉)
 원재료및함량: 볶은커피 100%
 포장재질: 페트
 반품및교환처: [Blank]
 보관방법: 건조 서늘한곳에보관
 *부정, 불량식품신고는 국번없이1399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

「인삼산업법」 제17조에 의한 검사필증



농협인삼검사용



자체검사업체용

벌꿀 등급판정 시범사업에 따른 등급제품 표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습기제거제, 산소흡수제, 가스흡수제 등



별도 포장 형태
(습기제거제)



캡슐형 용기 일체형태
(습기제거제)



리드에 부착된 형태
(가스흡수제)



내부에 부착된 형태
(가스흡수제)

[참고] 인정서류 예시

01
공통

재질별 재질·구조 기준

-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의 재질 정보

인정 서류 예시

-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허가증
- 의약품 안전성 테스트 자료 등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식품 용기·포장에 관한 심의자료
-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
- 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포함
- 의무생산자의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 수입제품의 경우, 수출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포장재 재질 설명서

Tip

식품 등 자가품질 검사 의무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 시험성적서, 중금속 검출여부 검사 등 타 목적의 검사 서류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단독으로 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참고] 인정서류 예시

01 공통

재질별 재질·구조 기준

- 합성수지 재질의 라벨 및 마개 및 잡자재의 비중

- 몸체의 직접인쇄, 표면코팅 여부

인정 서류 예시

- 비중이 제시된 합성수지
 - 증빙자료를 제출 생략 가능
 - 새로운 포장기술 개발에 따라 비중이 변경 (1이상 → 1미만)된 경우, 비중이 제시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 비중이 제시되지 않은 합성수지
 - 비중이 제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 해당 포장재의 사진 및 의무생산자의 포장재 발주규격서·납품확인서

[참고] 인정서류 예시

01 공통

재질별 재질·구조 기준

- 포장재 색상
- 라벨의 절취선 유무
- 라벨·마개·잡자재의 몸체와 분리가능 여부

인정 서류 예시

-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 표준색상표와 해당 포장재 비교 사진
- 무색의 경우, 안료 및 염료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포장용기 제조업체 발행서류
- 해당 포장재 사진
- 시험일시, 참여자 별 시험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시험 결과서
- 분리 전, 분리 중, 분리 후 사진 첨부

[참고] 인정서류 예시



재질별 재질·구조 기준

02 종이팩

- 알루미늄 첩합구조



인정 서류 예시

- 해당 포장재 사진
-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

03 유리병

- 마개의 구조(일체형 또는 분리형)

- 해당 포장재의 사진
- 자체 시험 전, 자체 시험 후

[참고] 인정서류 예시



재질별 재질·구조 기준

04 페트병

- 열알칼리성 분리 가능 접착제 사용여부
- 접(점)착제 도포 면적



인정 서류 예시

-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 시험일시, 방법, 시험분석 담당자 등이 제시된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
 - 라벨 미제거(박리) 플레이크 세척품 잔존율(%) 및 라벨 비중 분리율(%) 산정 결과 (0.001g 단위까지 측정)
 - 3D스캐너, Imagej 프로그램*등을 활용한 해당 부위 면적 계산 결과

*미국 국립건강보건원(NIH)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JAVA기반의 오픈소스 이미지처리및분석프로그램

05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 알루미늄 두께

-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
- 의무생산자의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 수입제품의 경우, 수출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포장재 재질 설명서

[참고] 인정서류 예시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유형 I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수신자(평가의무자)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수신자(평가의무자)

공급받는자 (평가의무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포장재 재질·구조정보

구분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	비고
몸체	몸체 HDPE	
라벨		
마개 및 삽자재	마개 PP 마개 바킹 (PE)	

※ 두께, 색상값, 열안정성 분리 접착제 여부, 접착제 도포면적 항목의 경우 기기분석 정보(시험일시, 시험자, 분석 장비명 및 분석 결과 사진)는 별지로 작성(예시 참고)

발급날짜

2020년 05월 12일

포장용기 제조업체명

포장재 제조업체명 및 직인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유형 II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발급날짜

2020.03.24

문서번호 :

수신자(평가의무자)

제 목 : 포장재 동결판정을 위한 제조사 포장재 규격 확인서

1. 귀사의 익일 번장하심을 기원합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 동결판정을 위해 당사에서 공급하는 제품(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공급받는자	상호	대표자 성명	인발기
-------	----	--------	-----

포장재 재질·구조정보

포장재	재질 코드	포장재 재용명
몸체		몸체
재질 사양		PP
포장재	마개 코드	포장재 재용명
몸체		마개
재질 사양		PP
포장재	마개 코드	포장재 재용명
몸체		마개
재질 사양		PP

※ 유의

1. 적용 제품 리스트
2. 공인기관 시험성적서(포장재 재질 확인 용)
3. 포장재 제조 공정도

포장재 제조업체 직인

대표이사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수출사 발행*)

*수입업체의 경우, 수출사가 발행한 재질·구조 증명서로 증빙 가능

■ 영문 샘플

Certificate of packing material and structure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vender 공급받는자 (평가의무자)	Company name (상 호)	Representative (대표자 성명)
	수신자(평가의무자) 및 발신자정보 (contact number : 0000-0000-0000)	
Packaging Information (포장재 정보)	Address (주 소)	Name of product (대포출력평가신청한 제품명)
	Type of materials (포장재 종류)	

Packaging Material, Structure Information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	Body (몸체)	
	Label (라벨)	
	Cover(cap), sub-materials (마개 및 삽자재)	

발급날짜

Year Month Date

수출업체 직인 또는 책임있는 자의 서명

Packing Materials Manufacturer Representative (signature)

- ※ 1. For the item such as thickness, color value, thermal-alkali separational adhesive and adhesive application area, Device analysis information (test date, tester, the name of the analysis equipment and analysis result photo) should be written separately.
2. Please attach the information of packaging container or subsidiary material supplier's report, packaging material ordering specification and delivery confirmation, and material safety date sheet(MSDS) which can check the raw materials.

[참고] 인정서류 예시

관련법에 따른 허가·심의 서류(1/2)

제 18 조 준수번호 : 20130053547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신고(변경신고)필증**
 의약외품 수입

신고인	제조(양행)소외명칭 제조(양행)소의 소재지	합허가(합신고, 수입자)번호
성명	주인등록번호	의약품 분류
제출인(수입의 경우 수입업)		
물품약품 및 그 분할	발행	
형상	발행	
제조방법	발행	
효능·효과	발행	
용법·용량	발행	
사용상의 주의사항	발행	
표준단위	제조원 표창단위	
차량방법 및 사용(유통)기간	기밀용기, 실온(1~30℃) 보관 제조일로부터 36개월	
기준 및 시험방법	발행	
제조원(수입의 경우)	발행	
신고수리조건		
비고	문위번호 :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4년 04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허가 서류가 맞는 자 확인

관련법에 따른 허가·심의 서류(2/2)

문서확인번호 : CEMV-BYSU-IDTP-C169

제조방법

공정번호	공정명칭	필요 시약 용매 등	비고
1			
2			
3			
4			
5			
6			
7			
8	포장	공정 7의 완제품	

주의: 내용물과 닿는 부분만 표시된 경우 불인정

포장재 재질·구조 육안판정 결과서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포장재 재질·구조 육안판정 결과서

포장재 종류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 PE	재질구조	라벨: 용체와 동일재질 마개: 용체와 다른 재질, 분리가능 장소
판정일시	2020. 04. 08		
판정항목	마개와 용체 분리가능 여부		
판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19-265호, 제4조 및 별표2에 따라 육안판정		
판정결과	판정요원	판정결과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 가능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 가능	

판정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동영상 등)



분리 전 분리 중 분리 후

위 내용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별표 2.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른 육안판정 결과임을 확인합니다. **서류발행자직인**

2020년 04월 08일

평가책임자 : [인]

평가의무자 대표 [인]

불인정서류 예시

MSDS 단독 제출 서류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품명: [제품명]

1. 화학물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위험성
 3. 취급 시 주의사항
 4. 물리적·화학적 특성
 5. 안정성 및 반응성
 6. 독성학적 정보
 7. 환경영향
 8. 운송정보
 9. 기타 정보

이 MSDS는 [제품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MSDS는 [제품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MSDS는 [제품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MSDS는 [제품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MSDS는 [제품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MSDS는 [제품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제품 포장에 관한 재질정보인지 알기 어렵고 주고 받는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내용

자가품질위탁검사 성적서

시험·검사성적서

시험·검사번호: [번호]

발행번호: [번호]

발행일자: [날짜]

시험·검사일자: [날짜]

시험·검사결과

시험·검사항목	단위	시험·검사기준	시험·검사결과	합격	비고
중량불균형	mg/L	1 이하	불합격	-	
중량불균형(산화물)	mg/L	10 이하	1	합격	
중량불균형(수소산)	mg/L	30 이하	8	합격	
중량불균형(수소이온)	mg/L	30 이하	4	합격	
중량불균형(수소이온)	mg/L	150 이하	16	합격	

시험·검사결과: [결과]

시험·검사결과: [결과]

자가품질위탁검사는 재질 증빙 불가능
시험의뢰서류명이 PP라는 의미

- 자가품질위탁 검사는 재질 증빙 불가능

불인정 사유

불인정서류 예시

시험결과가 불안정한 경우

시험 성적서

3. 시험결과

1) PET병 중 라벨

시험항목	단위	시험기준	시험결과	결론	시험방법
라벨 마커 (박리)된 상태 잔존율	%	라벨이 제거(박리)되지 않은 폴리에틸렌 세척품이 3% 미만이어야 함	00 (라벨이 모두 박리됨)	라벨은 케트르티터 분리됨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사용의 용이성 관찰방법 중 제7항 PET병 포장재

--- 이 하 여 백 ---

- 열알칼리성 분리 점(점)착제 여부 실험 시 확인되어야 할 시험 항목 3가지 중 1가지만 명시된 경우

내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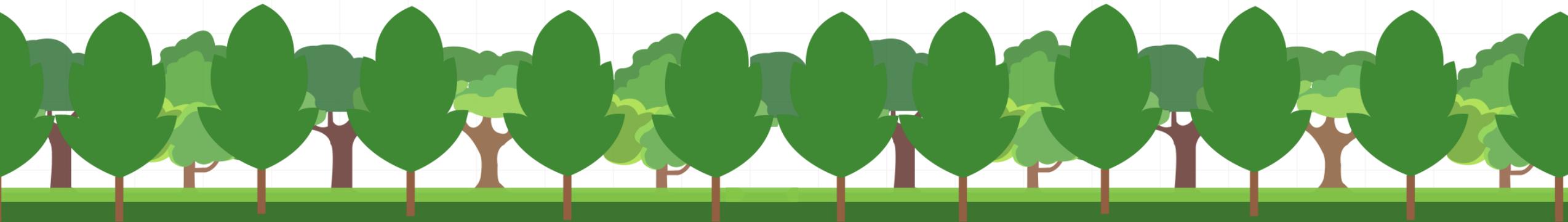
6. 결 론

시험 항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라벨의 열알칼리성 분리 점(점)착제 여부 판정 시험	라벨이 제거(박리)되지 않은 폴리에틸렌 세척품 잔존율 점(점)착제 잔존유무 (육안 확인) 적외선 분광분석기 (FT-IR)	라벨이 제거(박리)되지 않은 폴리에틸렌 세척품이 3% 미만이어야 함 육안으로 점착제가 관찰되지 않아야 함 Spectrum 결과가 PET 단일재질의 분석결과와 일치하여야 함
라벨 점(점)착제 면적·양 판정 시험	- 점(점)착제 도포면적/패트병 전체 면적 - (재활용 우수) 20% 이하 - 점(점)착제 도포면적/라벨 면적 - (재활용 최우수) 0.5% 미만 - (재활용 우수) 60% 이하	6.04 % PET 표면에 점착제가 일부 관찰됨 일부 시료에서 PET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정 Peak가 확인되지 않음
라벨의 비중 1 미만 여부 판정	시험 후 수면 위로 부상한 라벨이 97% 이상이어야 함	100 %
마개의 비중 1 미만 여부 판정	시험 후 수면 위로 부상한 라벨이 97% 이상이어야 함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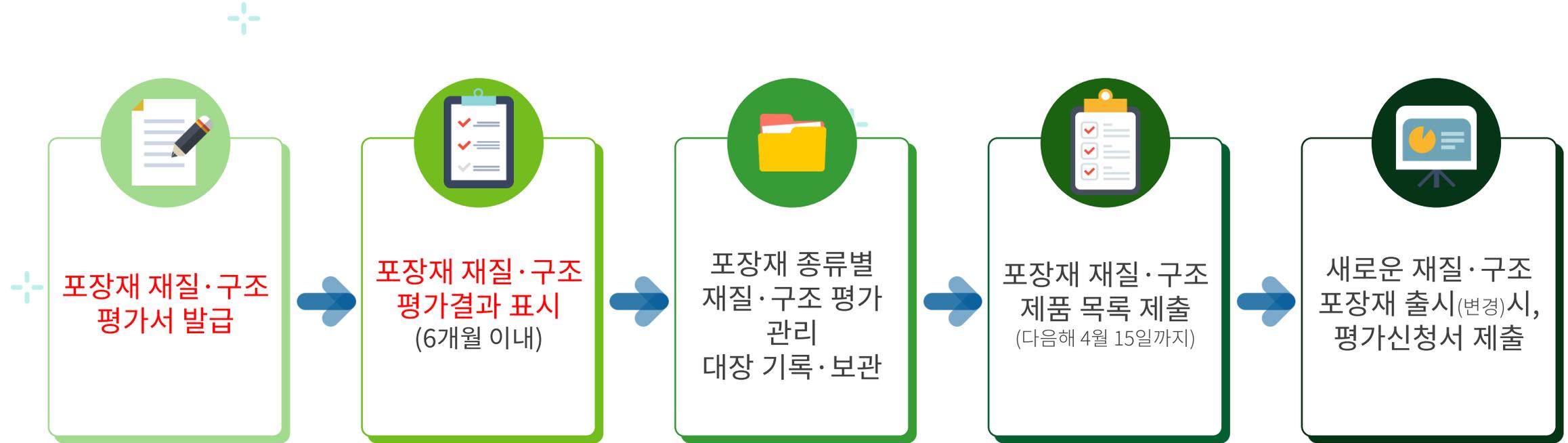
불인정 사유

- 시험분석결과 열알칼리성 분리 점(점)착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V. 등급표시 및 연기신청



평가결과서 발급 후 조치사항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발급

평가결과서 발급

- 발급권자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발급 시기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부칙 제2조제3항
 - ** 자체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접수 시 자동 발급



큰거 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3항

- 공단 이사장은 제출 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발급

평가결과서 발급 방법

평가신청

HOME > 포장재재질구조개선 > 포장재 재질구조평가 > 평가신청

신청서 출력 | 결과서 출력 | 조치계획 보고서 출력 | 신규작성 | 조회

관할본부: 전체 | 평가의무자: 한국환경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처리상태: 전체 | 결재 진행 | 포장재 종류: 전체

자체평가등급: 전체 | 평가결과등급: 전체

평가결과서번호: | 접수번호: |

담당자 성명: | 검토자 성명: |

접수일자: | 보완제출일자: |

검토기한: | 기타: 선택

재질·구조: 전체 | 전체 | 전체

보완기원안정승인 | 제출 | 삭제 | 엑셀다운로드

처리상태	평가의무자		최근출고실적 제출연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할본부	대표제품명	포장재 종류	
	업체코드	업체명						코드	명
<input type="checkbox"/>	반려	1910121	한국환경공단...	137-82-07000	124971-00017...	부산울산경남...	09	복합재질 용기	트레이...
<input type="checkbox"/>	접수	1910209	한국환경공단...	137-82-07000	124971-00017...	본사	07	페트병	
<input type="checkbox"/>	승인	1910121	한국환경공단...	137-82-07000	124971-00017...	부산울산경남...	09	복합재질 용기	트레이...

평가신청

HOME > 포장재재질구조개선 > 포장재 재질구조평가 > 평가신청

신청서 출력 | 결과서 출력 | 조치계획 보고서 출력 | 신규작성 | 조회

관할본부: 전체 | 평가의무자: 한국환경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처리상태: 전체 | 결재 진행 | 포장재 종류: 전체

자체평가등급: 전체 | 평가결과등급: 전체

평가결과서번호: | 접수번호: |

담당자 성명: | 검토자 성명: |

접수일자: | 보완제출일자: |

검토기한: | 기타: 선택

재질·구조: 전체 | 전체 | 전체

보완기원안정승인 | 제출 | 삭제 | 엑셀다운로드

처리상태	평가의무자		최근출고실적 제출연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할본부	대표제품명	포장재 종류	
	업체코드	업체명						코드	명
<input type="checkbox"/>	반려	1910121	한국환경공단...	137-82-07000	124971-00017...	부산울산경남...	09	복합재질 용기	트레이...
<input type="checkbox"/>	접수	1910209	한국환경공단...	137-82-07000	124971-00017...	본사	07	페트병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승인	1910121	한국환경공단...	137-82-07000	124971-00017...	부산울산경남...	09	복합재질 용기	트레이...

① 포장재재질구조개선-평가신청-조회

② 해당 평가결과서 선택 - 결과서 출력

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 표시 기준일 : 제품 제조일
 평가결과 표시 기한 : 제품 제조일

-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6개월 이내에 표시 곤란 시 9개월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 신청 가능



의무 표기

‘재활용 어려움’ 등급

플라스틱
PP
 뚜껑 : HDPE
 재활용 어려움

선택 표기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

기준	방법
표시 방법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표시 색상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표시 위치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의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 식품포장용 랩·필름 포장재에 한함
기타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표시 가능 ※ 다운로드 : iepr 홈페이지 > 고객마당 > 자료실

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 분리배출 표시 상단에 표시하는 경우



- 분리배출 표시 하단에 표시하는 경우



* 등급 표시 도안은 홈페이지-고객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기하는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급 표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

-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 다음의 등급 포장재는 표시 여부 선택 가능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표시 의무 면제 대상 포장재

-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분리배출 예외 포장재” 및 멸균팩 등 제품 기능상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포장재는 평가 결과 미표시 가능



큰거
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급 표시(표시의무면제 포장재)

I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포장재

- ①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 ②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 ③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 ④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 ⑤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⑥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를 말한다)
- 다만, PVC 및 PVDC를 사용하는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예외 없이 평가 결과 표시 대상
- ⑦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크거
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급 표시(표시의무면제 포장재)

“재활용 어려움” 표시 예외 포장재

-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멸균팩 등 제품 기능상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포장재는 평가결과 미표시 가능

- 멸균팩, 와인병, 위스키병은 별도의 예외 신청 없이 평가결과 미표시 가능
- 기타 제품 기능상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포장재는 예외 신청 시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예외로 인정할 경우 평가결과 미표시 가능

*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안건 접수 시 신청 가능하며, 접수일정은 홈페이지 별도 공지



큰거
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표시기한 연기 신청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포장재 겉면에 평가 결과 표시가 곤란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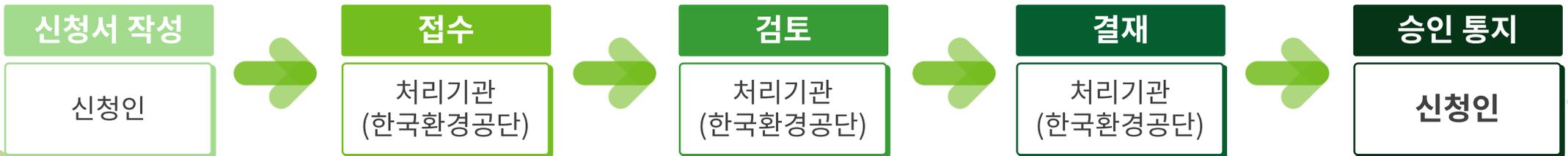
제출기한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10일 전까지 환경공단에 신청서 제출
- * 처리기한 : 10일

제출서류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처리절차



표시기한 연기 신청 증빙서류

📎 연기신청을 희망하는 명확한 사유 작성 및 사유*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 인쇄 내용 변경을 위한 동판 교체, 금형설비 교체, 선라벨을 후라벨 방식으로 변경을 위한 제조공정 변경 등

동판, 금형 등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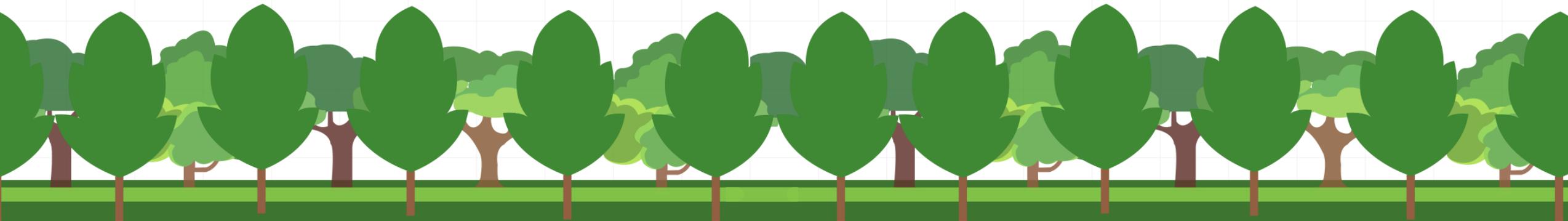
- 동판, 금형 등 변경 절차 및 소요기간 등 포장재 변경 완료 시기가 확인 가능한 자료
 - 발주(주문)서, 거래명세서, 내부결재 문서 등
 - 수입제품의 경우 수출사의 제작계획서, 수입사의 내부결재 문서 등

기타 사유

- 기타 연기 신청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내부서류 일 경우 대표자의 직인 날인 또는 책임자의 서명 확인



V. 포장재 재질구조 목록 관리 및 제출



평가결과서 발급 후 조치사항



평가받은 포장재·제품 목록 관리 및 제출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을 환경공단으로 부터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기록·보관

※ 환경공단 전자시스템에 입력하여 보존하는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는 같음 가능

● 포장재 재질·구조에 관한 자료 제출

(관련근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6항)

- 평가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해당 포장재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환경공단에 제출

※ 제출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안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구조	③ 평가 결과서 번호	④ 평가 결과	상품명(규격)	비고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구조	상 품 명(규격)	개당 포장재 무게	연간 출고량 (개)	제품/포장재 출고량(kg)	③ 평가 등급	비 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제6항에 따라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 하

신청인

평가받은 포장재·제품 목록 관리 및 제출

● 제출 대상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 * OEM 주문 시 자사브랜드 소유자 대상
- * 제품군 의무생산자 해당사항 없음

● 유의사항

-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와 일치하도록 작성
- 전산시스템(EPR) 접속하여 제출 시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와 동시 제출 가능

환경부 예규 별지 제3호 서식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구조	상 품 명 (규격)	개당 포장재 무게	연간 출고량 (개)	제품(포장재) 출고량(kg)	③ 평가 등급	비 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제6항에 따라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평가받은 포장재·제품 목록 제출 예시

● 자료 작성 예시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구조	상 품 명 (규격)	개당 포장재 무게	연간 출고량 (개)	제품/포장재 출고량(kg)	③ 평가 등급	비 고
↓	↓	↓	↓	↓	↓	↓	
01~09 포장재 종류	평가받은 체크항목 작성	실제 판매되는 제품명 (모델명)	개당 실측 중량(g) : 소수점 둘째 자리 까지 산출	'20년 연간 출고수량(개)	개당 중량(g) × 연간출고수량(개) =연간출고량(kg)	평가결과서 등급으로 작성	
단일재질 용기류	(몸체) PE재질 (라벨) 몸체에 직접인쇄 (마개 및 잡자재) 몸체와 동일한 재질	케이에코 고추장 1kg	602.02	1,200	722,424	재활용 우수	
단일재질 용기류	(몸체) PE재질 (라벨) 몸체에 직접인쇄 (마개 및 잡자재) 몸체와 동일한 재질	케이에코 고추장 2kg	821.05	2,609	2,142,129.45	재활용 우수	

● 작성 요령

① 포장재 종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별표 1의 포장재 별로 구분하여 작성

② 포장재 재질·구조

: 등급기준 별표 1의 포장재별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의 각 종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
(예: 00몸체 00라벨 00마개 포장재)

③ 평가 등급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재(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기재)

평가받은 포장재·제품 목록 관리 및 제출

● 온라인 제출 방법(EPR출고·수입실적서 동시 작성)

○ 중량산출기초자료 작성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등급 선택

※ [단계1]중량산출기초자료를 입력하여 저장 후 [단계2]출고수입실적서를 확인하십시오. 전년중량산출기초자료 가져오기

[단계1]중량산출기초자료 [단계2]출고수입실적서 샘플엑셀파일다운 엑셀업로드 품목추가 행 복사 행 삭제 전년출고수입실적

출고수입량	* 자사구분	타사업체코드	타사업체명	평가결과등급	평가결과서번호	평가결과표시예외
0	KG	자사		① 클릭!		
0	KG	자사				

평가 정보검색

조회조건 조회

접수일자 [15] ~ [15] 평가결과서번호

조회결과 선택

선택	코드	포장재 종류 명	재질구조	평가결과서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01	종이팩	몸체: 기타 마개 및 잡자재: 몸체와 분리가능한 ...	202007090100
<input type="checkbox"/>	01	종이팩	몸체: 알루미늄 접합 구조 사용 마개 및 잡자재: ...	202007070100
<input type="checkbox"/>	01	종이팩	몸체: 기타 마개 및 잡자재: 몸체와 분리가능한 ...	20200240100
<input type="checkbox"/>	01	종이팩	몸체: 기타 마개 및 잡자재: 몸체와 분리가능한 ...	
<input type="checkbox"/>	01	종이팩	몸체: 알루미늄 접합 구조를 사용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01	종이팩	몸체: 알루미늄 접합 구조 사용 마개 및 잡자재	

② 팝업 창에서 해당 포장재의 평가 정보 선택

※ [단계1]중량산출기초자료를 입력하여 저장 후 [단계2]출고수입실적서를 확인하십시오. 전년중량산출기초자료 가져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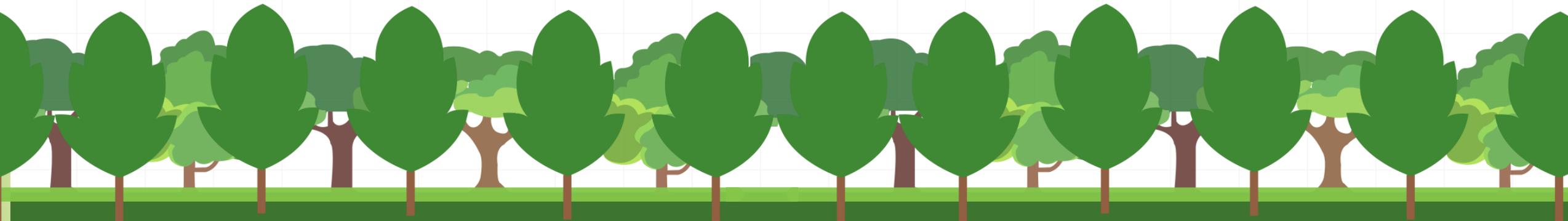
[단계1]중량산출기초자료 [단계2]출고수입실적서 샘플엑셀파일다운 엑셀업로드 품목추가 행 복사 행 삭제 전년출고수입실적

출고수입량	* 자사구분	타사업체코드	타사업체명	평가결과등급	평가결과서번호	평가결과표시예외
0	KG	자사		재활용 어려움	20200709010003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과실주포장에 사용된 유리병 위스키포장에 사용된 유리병 역회수 협약체결 화장품 기타(검토위원회 인정 포장재)
0	KG	자사				

③ 평가결과표시예외인 경우 예외 사유 선택



VI. 헛갈리는 등급평가 사례



페트병과 페트용기의 구분

사례 1. 페트병

몸통에서 입구 쪽으로 좁아지는 모양



사례 2. 페트 용기(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포장재별 금속스프링이 내장된 펌프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분류: 펌프는 마개로 분류

- 가. 유리병: 몸체와 분리 가능하면 “재활용 우수”
- 나. 페트병: 분리유무와 관계없이 “재활용 어려움”
- 다.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몸체와 분리 가능하면 “재활용 보통”
- 라.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몸체와 분리 가능하면 “재활용 보통”

몸체가 페트병만 아니라면 재활용 보통 이상의 등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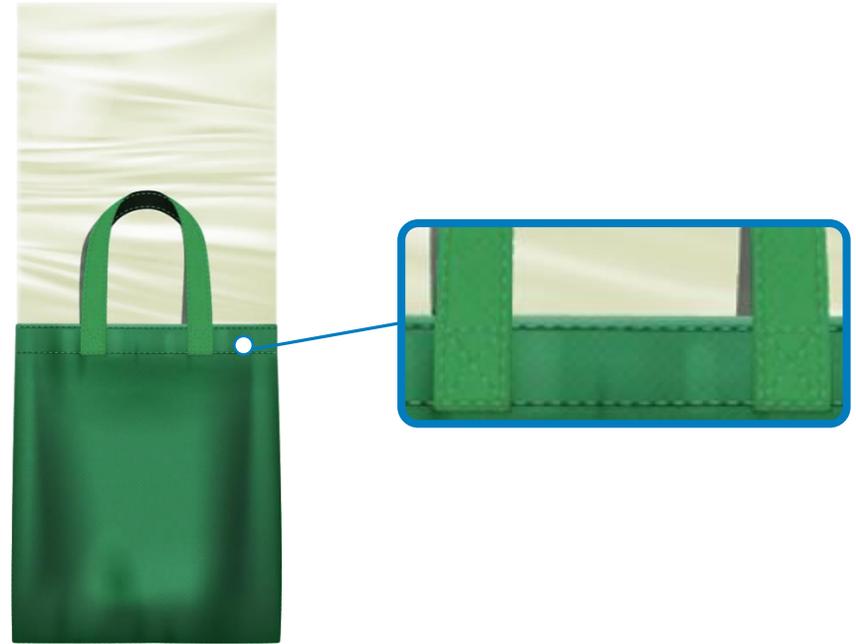
복합재질 필름 · 시트류 평가 예시

사례 1. 부직포와 합성수지 필름, 시트류가바느질 등의 방법으로 부착되어 손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몸체: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 필름 · 시트류
잡자재: 지퍼

사례 2. 단일재질 합성수지 필름, 시트류가 서로 바느질 등의 방법으로 부착되어 손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몸체: 두가지 이상의 단일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 필름 · 시트류

복합재질 용기 · 트레이류 평가 예시

사례 화장품 팩트류



- ✓ 화장품 팩트류는 용기류 몸체(몸체 각 구성부의 재질이 다른 경우 복합재질로 분류)와 잡자재(거울)로 평가
- ✓ 제품을 머금고 있는 스펀지와 퍼프는 포장재가 아니므로 평가하지 않음
- ✓ 별도로 제공되는 리필용 제품과 퍼프는 평가하지 않음
- ✓ 팩트를 포장하고 있는 종이상자는 평가하지 않음

복합재질 용기 · 트레이류 평가 예시

사례 복합재질 용기(튜브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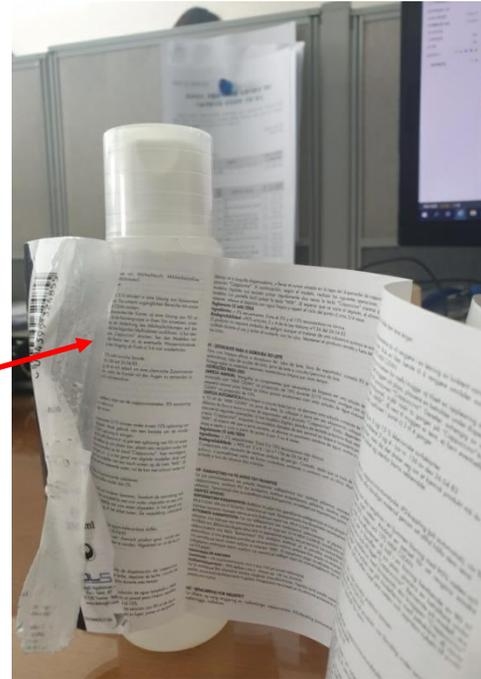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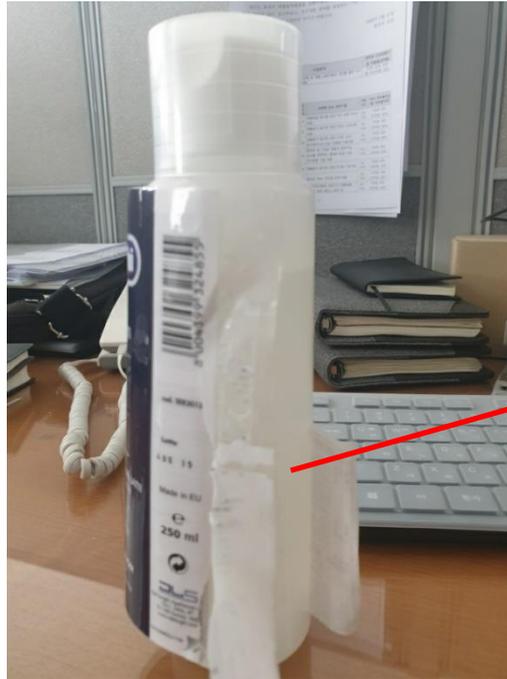


라벨
(몸체에 직접 인쇄)

몸체가 단일재질이나 몸체의 입구에 다른 재질이 사용
된 경우 복합재질 용기류로 평가

라벨 평가 관련

사례 종이재질의 제품사양서가 합성수지 용기 라벨에 부착된 경우



종이박스 등 2차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본체인 합성수지 용기 라벨에 접착제 등으로 종이재질의 제품사양서 등을 접어서 이어 붙인 포장재의 경우, 라벨에 이어 붙인 제품사양서 등도 라벨로 평가

금박 인쇄 관련

사례 용기 몸체에 금박 인쇄한 경우



금속 성분을 사용하여 인쇄한 경우

유리병, 페트병: “금속혼입라벨”로 분류 (재활용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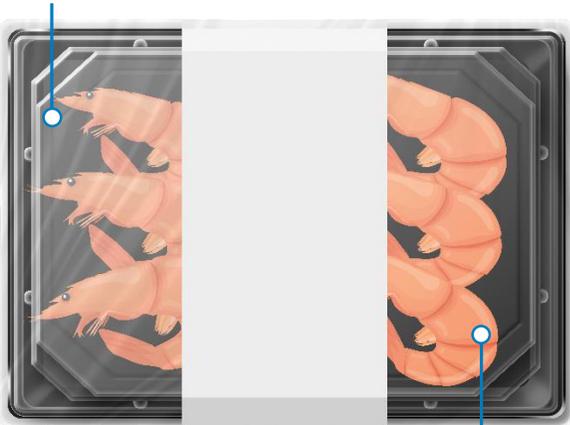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몸체에 직접 인쇄”로 분류 (몸체 재질에 따라 등급기준 상이)

다중 포장재 평가 예시

다중포장재의 경우 1차포장재와 2차 포장재를 각각 평가 진행

사례 1. 내용물을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비닐로 2차 포장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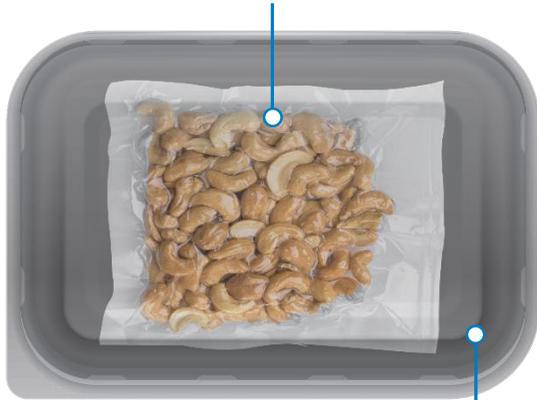
2차포장
(필름·시트류)



1차포장
(용기·트레이류)

사례 2. 내용물을 비닐에 담아 용기로 2차 포장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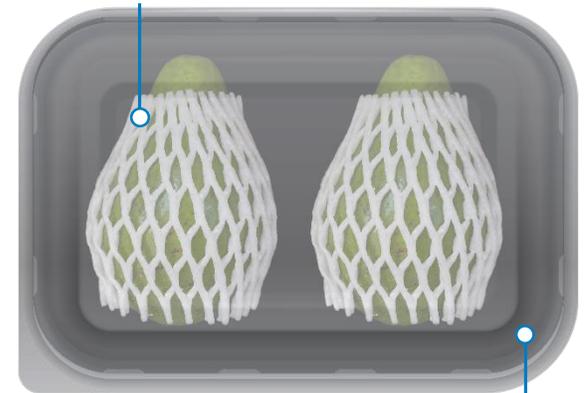
1차포장
(필름·시트류)



2차포장
(용기·트레이류)

사례 3. 내용물을 발포합성수지 완충재에 담아 용기로 2차 포장한 경우

1차포장
(발포합성수지)



2차포장
(용기·트레이류)

다중 포장재 평가 예시

사례 개별 포장된 제품을 묶음 포장한 경우

1차 포장
(용기트레이류 몸체 +
라벨(몸체에 직접 인쇄) + 마개)



2차 포장
(용기트레이류 몸체)



3차 포장
(용기트레이류 몸체 + 잡자재)



- ✓ 개별 포장된 제품을 트레이(받침접시)에 담아 파우치에 포장한 경우 개별 포장과 묶음 포장재를 각각 평가
- ✓ 3차 포장재(파우치)에서 지퍼 부분은 잡자재로 평가
- ✓ 3차 포장재에서 종이재질 라벨이 몸체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끼워져 있는 구조인 경우 라벨로 평가하지 않음

그 외 Q&A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제작된 E-Book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근)

전산시스템(www.iepr.or.kr) > 고객마당 > 자료실 > 포장재 재질·구조평가제도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가이드북,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사례집(포장재, 더 EZ하게)

(내용)

1. 제도소개 동영상
2. 헛갈리는 등급평가제도
3. 증빙서류 구비
4.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표시제도 Q&A
5. 시스템 이용방법 Q&A
6. 품목(포장재)별 알기 쉬운 설명자료
7.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사례 등



Q1. 도포척합표기와 재활용용이성등급표시 관련

● 질문내용

- 도포척합표시를 한 경우에도 재활용어려움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지?

● 답변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140호) 및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1-57호)은 별개의 고시이므로 각각 고시에 맞게 표시하여야 함
- 따라서, 도포척합 표시(必) 후 해당 분리배출표시 상단, 하단 또는 측면에 재활용 등급을 표시

Q2. 재활용용이성 등급평가 관련

● 질문내용

- 30ml 이하 제품들은 재활용용이성 등급평가 대상인지?

● 답변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 수입하는 포장재*의 경우 포장재재질구조평가 대상

*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 단, 의약품 및 의약외품 중 바이알·앰플·PTP포장·병모양이 아닌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은 EPR비대상으로 포장재재질구조평가 비대상**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1-57호) 제5조에 따라 등급표시는 생략 가능

질의 응답





감사합니다.



한국환경공단

